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12월 20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12월 20일

3. 제안이유

- 사업대상자를 시장, 군수도 선정 가능토록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 용자금의 지원대상에 작목반등 농어민 조직 단체도 포함하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증대 시키며,
- 결산보고 기일을 일반회계와 같이 조정하여 업무 추진을 합리화하고 직제 개편에 의한 관직명을 변경코자 함.

4. 주요골자

- 사업대상자 선정시 도지사가 품목 및 사업비를 시, 군에 배정하면 시장, 군수가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 사업비의 지원시 개인별로 "일천만원 이상 이천만원이내"로 하던것을 작목반등 농어민조직도 1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토록 추가
- 회계 결산보고일을 "다음 회계년도 1월말"에서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 보고토록 하여 일반회계와 같이 동일

- 직제 개편에 의하여 "농어촌개발국장"을 "농정국장"으로, "농어촌개발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명칭을 변경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사업대상자를 도지사가 개별 심사 하던 것을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시,군에 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하면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지원대상자를 작목반등 농어민 조직을 추가하여 대상의 폭을 넓히고 회계결산 보고 기일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정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관직의 명칭을 변경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추진의 합리화를 가져오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 됩니다.

6. 칙 부

-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